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3.~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리령 제178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201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7년 1월 31일”을 “2028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78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201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총리령 제178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201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u>2027년 1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8년 7월 31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